



PL법 시행과 파렛트 관리

전만술 / 한국물류협회 물류연구원 원장

I. PL법(제조물 책임법)의 개요

1-1. PL법의 개념

소비자 또는 상품의 이용자가 해당상품으로 인해 신체, 생명, 재산의 안전을 손해 당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여 제조업자의 안전확보 노력을 촉구하는 제도를 PL(Product Liability)제도라고 말하며 이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PL법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소비자 또는 상품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현행법상 (주로 민법 관련조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작회사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PL(민법 중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 이러한 입증 책임이 없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된다.

1-2. PL법의 제정경위와 목적

PL법(제조물 책임법)은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합제조물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정부에 이송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

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법 제1조)

1-3. PL법의 주요 내용

PL법은 전문 제9조와 부칙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이 6가지의 주요골자로 구성되고 있다.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법 제2조 제1호)

둘째,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기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 제2호)

셋째,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

넷째,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결합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

다섯째,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법 제6조)

여섯째, 책임기간의 제한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

본법 부칙 제 2항에서는 이 법의 적용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법규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법의 적용에 대하여 불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법 부칙 제2조항에서도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공급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 법률의 시행(2002년 7월 1일) 후에 제조업자 등이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외국의 PL법 시행현황

전 세계적으로 PL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30여개 국에 달하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은 모두 시행중이고 개도국 가운데서도

중국, 필리핀 등이 채택하고 있다.

EU, 미국 등 선진국들이 PL법을 시행함에 따라 PL법이 없는 국가들은 대외무역에서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수출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WTO체제에 따라 타국의 저질 상품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간접적 제어 수단도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PL법 제정과 시행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2-1. EU의 PL지침시행

EU는 PL 지침을 마련하여 1985년 가맹국에 시달하였다. 이 지침의 정식명칭은 결합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등에 관한 각료 이사회 지령이다. 이 지령은 모든 가맹국에 대해 3년 후를 기한으로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률제정을 의무화시키려는 것이다. 통일적인 입법이 필요했던 배경에는 시장통합을 지향하기 위해 EU 가맹국의 조건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PL 선진국인 미국처럼 PL대책 비용이 높아질 경우, 그것이 제조원가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EU가맹국에 PL법 제정 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있으면 동일제품에 각기 다른 가격이 매겨져 상거래선 불공정거래가 된다는 견해이다. 유럽 각국은 미국과 같이 철저한 소송사회는 아니므로 EU의 PL 소송사례는 대륙법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기업에 크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각국에서는 PL 지침이 제정된 후에도 소비자가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업 도산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제조업자의 안전에 대한 배려도 상품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제조업자(파렛트 제작업체)는 EU각국의 기업행동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2. 미국의 PL법 시행

미국에서는 지난 1964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80년대 말부터는 연간 소송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2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송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변호사 제도에다 배심원들이 피해자에게 동정적으로 판결을 내려 제조업자에게 너무 심한 부담을 주는 경향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결과 제조업자 중에는 손해보험을 거절당하고 위험을 회피하지 못하여 공장을 폐쇄하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재판을 보다 엄격하게 운용함으로써 소송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3. 일본의 PL법 시행

일본에서는 1994년 6월에 PL법이 국회에 통과하여 1년간의 주지기간을 거쳐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륙법 체계를 지니고 있는 일본은 EU의 PL지침 시행에서와 같이 변호사 접근이 쉽지 않고 사전화해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소송건수가 미국처럼 그리 많지는 않고 악용사례도 적은 실정이다.

3. PL법 적용의 특징

3-1.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

PL법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제소하는데는 그 제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되었다. PL법이란 민법 중 특별법으로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제소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제품 결함에 보상해 주어야 하는 강도 높은 손해배상 책임법이다.

3-2. 제품사용자(소비자) 책임주의를 규정한 법률

PL법은 제품사용의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부담이 경감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과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결함에 대한 입증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된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어졌고 다만 제품의 결함을 밝히기만 하면 되었다.

3-3. 제품 안전성 향상을 규정한 법률

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제품의 안전성 관리는 제조사 성능품질만이 아니라 안전 품질을 도모해야 하며 또한 사용시에 안전을 위하여 제품상에 설명, 지시, 경고 등의 표시와 올바른 사용법을 부착 또는 별도로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경함이 발생할 시는 PL 소송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 관리를 함으로써 업체 전체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어 결함 발생의 가능성은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PL법 시행은 안전기준이나 범위를 제조물 책임설정에 알맞은 형태로 정비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4. PL법과 파렛트 제품 규정

PL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에 따르면 파렛트 제품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해당되고 있다. 여기서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공정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은 만드는 것이다. 가공이라 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다면 플라스틱 파렛트는 제조에 해당되며 목재 파렛트와 철재 파렛트는 가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는 파렛트는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 민법 제99조)이 아니면서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인 동산에 해당한다.

5. PL법과 파렛트 관리

만약 파렛트를 사용하는 유통회사의 상품매장에서 고객이 파렛트가 훼손되어 상품이 무너져 신체상해를 당했다고 가정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우선 신체상해를 당한 고객은 1차적으로 유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가상할 수 있다.

이때 유통회사는 원인제공을 한 파렛트의 차손이 사용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파렛트 제작회사의 제작 잘못으로 인한 품질의 저하에서 온 것인지를 판단하여 파렛트 제작회사의 제품 결함에 원인이 있다면 제2의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다고 가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의 쟁점에서 파렛트의 품질과 올바른 사용 방법의 고지가 있었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파렛트의 제작회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다툼의 주요쟁점이 될 수 있다. 미국 파렛트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소송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때 소송의 1차 대상자(피고)는 파렛트 사용회사이며 2차 대상자(피고)는 파렛트 제작회사가 되고 있다.

결국 파렛트 제품이 PL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파렛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파렛트 관리를 위해서는 PL법 제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을 방지해야 한다.

5-1. 제조상의 결함 방지

파렛트가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 제작된 경우를 말하며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목재 파렛트 가공에서 부속 품이 빠지거나 잘못 결합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제조(제작)상의 결함을 방지해야 한다.

5-2. 설계상의 결함 방지

파렛트 제품이 설계도면대로 제작되었지만 설계 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만약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설계가 채용됐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재질, 제작 기술, 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파렛트의 제조설계를 안전 지향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

5-3. 표시상의 결함방지-올바른 사용방법의 고지

표시상의 결함은 파렛트 제작업체가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나 별도로 고지했음에도 파렛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파렛트의 올바른 사용방법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하며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은 파렛트 자체의 결함이다.

5-4. 기타 결함방지

PL법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형의 결함이 외에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여 포괄적으로 결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KS규격에 미달하는 파렛트를 저가로 구입하여 사용한다든가, 손상된 파렛트를 보수 또는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결함 등을 들 수 있다. ☞